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족 심사결정 사무 실무위원회 이관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46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유족 심사·결정 사무의 실무위원회 이관	3

I.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한규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5.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분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등).

II. 검토의견

1. 유족 심사·결정 사무의 실무위원회 이관(안 제5조제2항제2호 등)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 등).

현 행	김한규의원안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u>희생자</u> 및 <u>유족</u> 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 <u>희생자</u> 를----- ----- -----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희생자</u> 및 <u>유족</u> 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u>희생자</u>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u>위임</u>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 ----- <u>결정된</u>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2. (생략)

<신설>

3.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16조(보상금)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

희생자의 유족을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② -----
-----.

1.·2. (현행과 같음)

2의2. 희생자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상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6조제2항제2호의2-----

⑤ -----제6조제2항제2호의2-----

⑥ -----제6조제2항제2호

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 략)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의2-----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 및 제6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제5조 및 제6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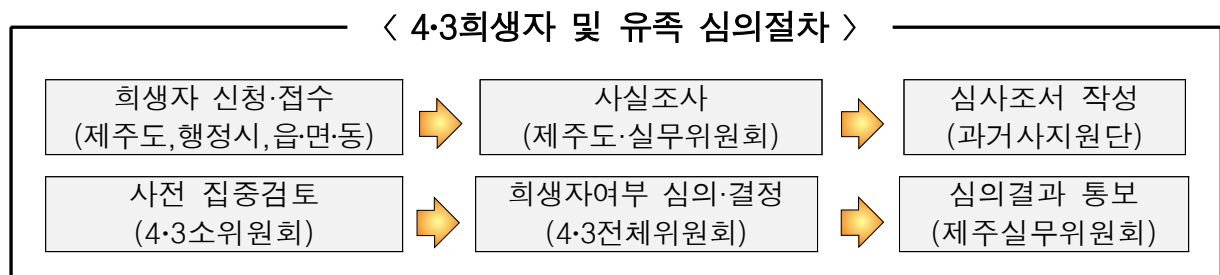
② (현행과 같음)

현재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접수 등 주로 집행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은 ① 실무위원회의 신고 접수, ②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 사실조사, ③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④ 실무위원회 전체위원회의 자료 심사 및 위원회에 대한 심사·결정 요청, ⑤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자료 서면 검토 및 보완 조사, 개인별 심사조서 작성, ⑥ 위원회 소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⑦ 위원회 전체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⑧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대한 심사·결정 통보, ⑨ 실무위원회의 신고자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 통보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희생자 14,822명, 유족 110,494명 등 총 125,316명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절차]



〈희생자 범위〉

제주4·3사건으로 ①사망한 자 ②행방불명된 자 ③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④수형인 중 '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심사·결정된 자

개정안은 유족의 심사·결정은 원칙적으로 희생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사무로서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행정사무 수행의 적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지 않음에도 위원회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유하여 적시성 있는 유족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사무 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4조는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그 밖에 화해조치와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포괄적인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바,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에 해당하는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실무위원회로 전부 이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규정을 둔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둘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20164호, 2024.1.30. 일부개정, 2024.7.31. 시행)으로 혼인신고의 특례, 입양신고의 특례 등 가족관계 정정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이에 따라 향후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에 관한 사항,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동 사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족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실무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행정사무 수행의 비효율이나 혼선 등 부작용이 야기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법 제2조제3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같은 유족 결정을 위한 심사 업무는 단순히 형식적 심사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임.

넷째, 현행법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르면,¹⁾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바,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무위원회로 위임하고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는 사무 위임의 형태로²⁾ 운영 방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⑤ (생략)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식을 변경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유족에 대한 주요 지원 혜택]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상금	진료비 (70세 이상)	생활보조비 (75세 이상)	교통비	주차료
희생자 1인 9천만원 ※ 제주4·3은 오래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유족이 보상금 수령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 지원 ※ 출연금(4·3평화재단)	▶희생자 배우자 (월 30만원) ▶유족(월 10만원)	연중 국내선 제주항공 40% 할인	제주도 내 공영 주차장 50% 감면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국민화합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조의 취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유족의 심의·결정 기능은 현행과 같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유지하되,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유족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희생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가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속한 사무처리에 도움이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될 수 있으나, 희생자 결정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유족 결정 신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희생자 심사·결정과 해당 희생자에 대한 유족 심사·결정이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3
